

제2539호
2017. 09. 2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훈 령
제164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 규정 폐지규정안 2
- 고 시
제2017-7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4
제2017-80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5
- 공 고
제2017-665호 :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공고 6
제2017-666호 :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훈 령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 규정 폐지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64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 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근거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015.8.11. 개정)

2. 폐지사유

가. 본 규정은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8. 5. 1.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5. 8. 11.) 시행됨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7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3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38-9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37	2017.09.20.	남대문로1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등·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다길 35 외 4건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다길 35	2017.09.20	건물철거
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56	2017.09.20	건물철거
3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55	2017.09.20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나길 21	2017.09.20	건물말소
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나길 21-1	2017.09.20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665호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0-97번지 사도개설자로부터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신청이 접수되어 「사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허가개요

- 가. 위 치 : 장충동2가 200-97번지
 나. 개설허가자 : (주)호텔신라 대표이사 손영희(현 이부진)
 다. 개설허가일 : 1982.08.18.(도정제1호)
 라. 사도결정조서

허가번호	구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도정제1호	신설	6	35	장충동2가 200-81	장충동2가 206	

2. 허가취소 사유

- 대상 사도의 경우 신라호텔 부지 내에 설치되어 호텔 출입구로만 사용되는 도로로써 사도 폐지 후 신라호텔 대지와 합병할 예정이므로 사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짐.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 2017. 09. 20. ~ 10. 13.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5)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의견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	
	(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사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중 구 청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666호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 고 일 : 2017. 9. 20.
-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10.
- 공고내용 : 명예도로명 부여

명예도로명	시 점	종 점	부여 사유	사용기간
우당 이회영길	명동11길 1	명동11길 42	우당 이회영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자 함	5년 (2017.9.20. ~2022.9.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3396-5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 도

